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99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유동수 · 허종식 · 민병덕
윤준병 · 안호영 · 신정훈
이강일 · 임미애 · 김남근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격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자격자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 수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된 공인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나, 세무사의 경우는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어도 3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현행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대체 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와 증명 등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감사, 증명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며,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도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법

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위촉인의 신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4조제7호 신설 및 제50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職務範圍)”를 “(직무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認會計士는 他人의”를 “공인회계사는 타인의”로, “各號의 職務를”을 “각 호의 직무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
2.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3.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부대되는 업무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제1항 중 “회계법인·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공인회계사,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業務의”를 “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 중 “會計法人이”를 “회계법인이”로, “者は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을 “자는 제2조의 직무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호 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명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第2條(職務範圍) <u>公認會計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u> 1. <u>會計에 관한 監査・鑑定・證明・計算・정리・立案 또는 法人設立등에 관한 會計</u> 2. <u>稅務代理</u> 3. <u>第1號 및 第2號에 附帶되는 業務</u> 第4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	<u>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u> <u>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각호의 직무를-----.</u> 1. <u>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u> 2. <u>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u> 3. <u>「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부대되는 업무</u> 第4條(缺格事由) -----

는 하나에 해당하는 者は 公認會計士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신설>

第28條(損害賠償準備金) ① 會計法人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的 第3者를 포함한다)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

1. ~ 5. (현행과 같음)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마다 損害賠償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準備金은 金融위원회의 승인없이는 損害賠償외의 다른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③ 공인회계사회는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第50條(業務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u>會計法人</u>이 아닌 者は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감사인</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업무의 제한) ----- ----- -----<u>회계법인</u>이 -----<u>자는 제2조의 직무를</u>----- -----<u>.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호 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